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공공지원민간임대 추가
임차인모집공고(정정)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Home 앱설치

애플앱스토어



바로가기

※ 2026.03.25.(수) 공고한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임차인모집공고 중 일부 오기가 있어 2026.03.25.(수)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변경 전 (p.3)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에 의한 신청유형(타입)별 동·호수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 후 (p.4)	삭제																																																							
공급내역	변경 전 (p.5)	입주 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변경 후 (p.6)	입주 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함)																																																							
특별공급	변경 전 (p.14)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th> <th colspan="8">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th> </tr> <tr>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100% 이하</td> <td>~3,813,363원</td> <td>~5,866,270원</td> <td>~8,168,429원</td> <td>~8,802,202원</td> <td>~9,326,985원</td> <td>~9,906,263원</td> <td>~10,485,541원</td> <td>~11,064,819원</td> </tr> <tr> <td>110% 이하</td> <td>4,194,699원</td> <td>6,452,897원</td> <td>8,985,272원</td> <td>9,682,422원</td> <td>10,259,684원</td> <td>10,896,889원</td> <td>11,534,095원</td> <td>12,171,301원</td> </tr> <tr> <td>120% 이하</td> <td>4,576,036원</td> <td>7,039,524원</td> <td>9,802,115원</td> <td>10,562,642원</td> <td>11,192,382원</td> <td>11,887,516원</td> <td>12,582,649원</td> <td>13,277,783원</td> </tr> </tbody> </table>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110% 이하	4,194,699원	6,452,897원	8,985,272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120% 이하	4,576,036원	7,039,524원	9,802,115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110% 이하	4,194,699원	6,452,897원	8,985,272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120% 이하	4,576,036원	7,039,524원	9,802,115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특별공급	변경 후 (p.15)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순위</th> <th rowspan="2">비율</th> <th colspan="8">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th> </tr> <tr> <th>1인</th> <th>2인</th> <th>3인</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100% 이하</td> <td>~3,813,363원</td> <td>~5,866,270원</td> <td>~8,168,429원</td> <td>~8,802,202원</td> <td>~9,326,985원</td> <td>~9,906,263원</td> <td>~10,485,541원</td> <td>~11,064,819원</td> </tr> <tr> <td>2순위</td> <td>100% 초과 110% 이하</td> <td>3,813,364원~ 4,194,699원</td> <td>5,866,271원~ 6,452,897원</td> <td>8,168,430원~ 8,985,272원</td> <td>8,802,203원~ 9,682,422원</td> <td>9,326,986원~ 10,259,684원</td> <td>9,906,264원~ 10,896,889원</td> <td>10,485,542원~ 11,534,095원</td> <td>11,064,820원~ 12,171,301원</td> </tr> <tr> <td>3순위</td> <td>110% 초과 120% 이하</td> <td>4,194,700원~ 4,576,036원</td> <td>6,452,898원~ 7,039,524원</td> <td>8,985,273원~ 9,802,115원</td> <td>9,682,423원~ 10,562,642원</td> <td>10,259,685원~ 11,192,382원</td> <td>10,896,890원~ 11,887,516원</td> <td>11,534,096원~ 12,582,649원</td> <td>12,171,302원~ 13,277,783원</td> </tr> </tbody> </table>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변경 전 (p.14)	특별공급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유형별 신청자 참관하에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후 (p.16)	특별공급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1~3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에 따라 예비임차인을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합니다.
사업주체	변경 전 (p.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여의도동)
	변경 후 (p.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여의도동, 세우빌딩)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급일정과 청약안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		1866-0533		
구분	임차인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일
일정	2026. 03. 25. (수)	2026. 03. 31. (화)	2026. 04. 03. (금)	2026. 04. 04. (토) ~ 2026. 04. 05. (일)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453번지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579세대, 85㎡ 초과 31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총 897세대 중 추가임차인모집 279세대
 ■ 시행사 :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주)
 ■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주택의 임대무기기간은 10년이며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시 사업주체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거나 당사 홈페이지(<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 더샵 오산역아크시티 견본주택 관람은 사이버견본주택(<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과 병행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상담전화(1866-0533)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주)(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주)에 귀속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퇴거요인(기존 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주)이며,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26. 03. 25.(수)]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라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
 -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하단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의3, 제2조 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임차인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요시에 사업주체는 임차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을 적용하며,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소득,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및 소득, 고령자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요건 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제외하고 공급하고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약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의 규정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자격(무주택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을 적용합니다.

■ 본 주택의 견본주택 개관은 오전 10:00부터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バー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불가)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가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시 사업주체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으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0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에서 10년 후 매매를 약속하는 소위 "분양가격을 확정된 매매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등 매매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세대당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 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그밖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1.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의무 발생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분	청약접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체결
일 정	2026. 03. 31. (화)	2026. 04. 03. (금)	2026. 04. 04. (토) ~ 2026. 04. 05. (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방문계약 (10:00 ~ 16:30)
장 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건본주택 -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 - 문의전화 : ☎ 1866-0533

1 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2025-주택과-33125(2025.10.30.)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수리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453번지 (오산 세교2지구 M1블록)
- 대지면적 : 33,211.1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지상38층 ~ 최고44층 공공지원민간임대 총897세대 중 추가임차인모집 2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내역 : 총 897세대 중 특별공급 18세대(청년 12, 신혼부부 4세대, 고령자특별공급 2세대), 일반공급 261세대
- 입주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m, 세대)

주택구분	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공급 세대수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 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		
공공지원 민간임대	84A	84.8730	33.4800	118.3530	58.1264	176.4794	-	-	-	-	90	90
	84A-1	84.8730	33.4800	118.3530	58.1264	176.4794	7	2	1	10	-	10
	84B	84.9846	34.5153	119.4999	58.2028	177.7027	-	-	-	-	33	33
	84B-1	84.9846	34.5153	119.4999	58.2028	177.7027	5	2	1	8	-	8
	104A	104.8129	40.6553	145.4682	71.7825	217.2507	-	-	-	-	138	138
	합 계							12	4	2	18	261

- 타입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타입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특별공급 : 84A-1, 84B-1 타입, 일반공급 : 84A, 84B, 104A 타입)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타입 명칭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본 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면적, 대지지분면적의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함.)
- 임차인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시 사업주체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 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천원)

공급구분	약식 표기 (타입)	동별(라인별)	층	공급 세대수	임대보증금	공급금액								잔금(41%) 입주지정일
						계약금(5%)		중도금(54%)						
						1회차 계약 시	2회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9%) 2026.06.20	2회(9%) 2026.12.20	3회(9%) 2027.06.20	4회(9%) 2028.04.20	5회(9%) 2028.08.20	6회(9%) 2028.12.20	
특별공급	84A-1	1303동 4호	2층	1	288,000	10,000	4,400	25,920	25,920	25,920	25,920	25,920	25,920	118,080
		1302동 4호	2층	1	289,000	10,000	4,450	26,010	26,010	26,010	26,010	26,010	26,010	118,490
		1306동 4호	3층	1	291,000	10,000	4,550	26,190	26,190	26,190	26,190	26,190	26,190	119,310
		1306동 2호	3층	1	293,000	10,000	4,650	26,370	26,370	26,370	26,370	26,370	26,370	120,130
		1306동 1호	4층	1	294,000	10,000	4,700	26,460	26,460	26,460	26,460	26,460	26,460	120,540
		1304동 4호	6층	1	295,000	10,000	4,750	26,550	26,550	26,550	26,550	26,550	26,550	120,950
		1301동 1302동 1306동 4호	5-6층	3	297,000	10,000	4,850	26,730	26,730	26,730	26,730	26,730	26,730	121,770
	1306동 2호	6층	1	298,000	10,000	4,900	26,820	26,820	26,820	26,820	26,820	26,820	122,180	
84B-1	1304동 3호	3층	1	289,000	10,000	4,450	26,010	26,010	26,010	26,010	26,010	26,010	118,490	
	1301동 1302동 3호	3층	2	292,000	10,000	4,600	26,280	26,280	26,280	26,280	26,280	26,280	119,720	
	1301동 1302동 3호	4층	2	294,000	10,000	4,700	26,460	26,460	26,460	26,460	26,460	26,460	120,540	
	1303동 3호	6층	1	296,000	10,000	4,800	26,640	26,640	26,640	26,640	26,640	26,640	121,360	
	1301동 3호	5층	1	297,000	10,000	4,850	26,730	26,730	26,730	26,730	26,730	26,730	121,770	

		1306동 3호	9층	1	299,000	10,000	4,950	26,910	26,910	26,910	26,910	26,910	26,910	122,590
일반공급	84A	1301동1302동1303동1304동1305동 1306동 1~4호	10~14층	22	358,000	10,000	7,900	32,220	32,220	32,220	32,220	32,220	32,220	146,780
		1301동1302동1303동1304동1305동 1306동 1~4호	15~19층	17	361,000	10,000	8,050	32,490	32,490	32,490	32,490	32,490	32,490	148,010
		1301동1302동1303동1304동1305동 1306동 1~4호	21~29층	31	369,000	10,000	8,450	33,210	33,210	33,210	33,210	33,210	33,210	151,290
		1301동1302동1304동1305동 1306동 1~4호	30~34층	11	376,000	10,000	8,800	33,840	33,840	33,840	33,840	33,840	33,840	154,160
		1301동1302동1303동 1306동 4호, 1305동 3호	35,36,39층	6	383,000	10,000	9,150	34,470	34,470	34,470	34,470	34,470	34,470	157,030
		1301동 1304동 1306동 4호	40,42층	3	387,000	10,000	9,350	34,830	34,830	34,830	34,830	34,830	34,830	158,670
	84B	1302동 1303동1305동 1306동 2~3호	22~23층	7	360,000	10,000	8,000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47,600
		1301동1302동1303동 1304동1305동 1306동 2~3호	24~29층	9	363,000	10,000	8,150	32,670	32,670	32,670	32,670	32,670	32,670	148,830
		1301동1302동1303동 1304동1305동 2~3호	30~34층	9	371,000	10,000	8,550	33,390	33,390	33,390	33,390	33,390	33,390	152,110
		1301동 1304동 1305동 2~3호	35~38층	5	378,000	10,000	8,900	34,020	34,020	34,020	34,020	34,020	34,020	154,980
		1301동1302동 3호	40층	2	381,000	10,000	9,05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34,290	156,210
	1301동 3호	43층	1	382,000	10,000	9,100	34,380	34,380	34,380	34,380	34,380	34,380	156,620	
	104A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2~4층	4	446,000	10,000	12,300	40,140	40,140	40,140	40,140	40,140	40,140	182,860
		1301동 1302동 2호	3~4층	3	447,000	10,000	12,350	40,230	40,230	40,230	40,230	40,230	40,230	183,27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5~9층	8	450,000	10,000	12,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184,500
		1302동 1303동 1304동 2호	5,8,9층	6	451,000	10,000	12,550	40,590	40,590	40,590	40,590	40,590	40,590	184,91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10,12,13,14층	7	454,000	10,000	12,700	40,860	40,860	40,860	40,860	40,860	40,860	186,14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2호	10~14층	9	455,000	10,000	12,750	40,950	40,950	40,950	40,950	40,950	40,950	186,55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15~19층	12	458,000	10,000	12,900	41,220	41,220	41,220	41,220	41,220	41,220	187,78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2호		15~19층	10	459,000	10,000	12,950	41,310	41,310	41,310	41,310	41,310	41,310	188,19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21,22,24~29층	15	465,000	10,000	13,250	41,850	41,850	41,850	41,850	41,850	41,850	190,65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2호		21~25~27~29층	16	466,000	10,000	13,300	41,940	41,940	41,940	41,940	41,940	41,940	191,06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호		30~41,43층	25	466,000	10,000	13,300	41,940	41,940	41,940	41,940	41,940	41,940	191,060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2호	30~42층	23	467,000	10,000	13,350	42,030	42,030	42,030	42,030	42,030	42,030	191,470
--	----------------------------	--------	----	---------	--------	--------	--------	--------	--------	--------	--------	--------	---------

-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84A, 84A-1, 84B, 84B-1타입 세대당 140,000,000원, 총 597세대)을 받아, 사용승인(사용검사) 전까지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부지에 1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총97,272,000,000원)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사용검사) 이후에는 세대당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타입의 주택에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타입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5%이며, 중도금은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라며, 잔금은 총 임대보증금에서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입주 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 합니다.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사업주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임대차계약 조건에 발코니확장 비용이(외부 샷시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비확장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주거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 현재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또는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므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은 84A-1, 84B-1이므로 반드시 해당 타입으로 청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입 혼돈으로 인한 신청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배정세대수 : 12세대 (84A-1 : 7세대, 84B-1 : 5세대)

모집유형	자격요건	선정방법
청년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청년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예비임차인 선정 :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	공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해당자	소득증빙서류	부모	• 청년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청년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구분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사실증명원	본인	• 청년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서류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청년]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본인 이외의 모든 제3자는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된 모든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배정세대수 : 4세대 (84A-1 : 2세대, 84B-1 : 2세대)

모집유형	자격요건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현재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의(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신혼부부]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공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전부 공개"
	혼인중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결혼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가족관계증명서)필요 (※미제출 시 공급계약 취소)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배우자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전부 공개"
		주민등록표등본	예비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혼인예정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혼인으로 구성될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 시킬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함. 해당 의료기관의 직인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 (견본주택 비치)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서류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의 모든 제3자는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된 모든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고령자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배정세대수 : 2세대 (84A-1 : 1세대, 84B-1 : 1세대)

모집유형	자격요건	선정방법
고령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65세 이상일 것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나.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고령자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10%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예비임차인 선정 :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고령자]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고령자	공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 "전부 공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전체내역 선택하여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해당자	사실증명원	본인	• 고령자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구분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기타서류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의 모든 제3자는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된 모든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원)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가구원수 산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산정 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	
근로자	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 하여야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신청자 중 당첨자는 해당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발급형태 선택에서 "전체 발급" 으로 선택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선택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1~3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에 따라 예비임차인을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공고 일자는 추후 결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내에서 소득 순위(1~3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에 따라 9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당사 홈페이지(<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3자 대리인 접수 시 추가사항

구분	해당서류	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3자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 신청자 본인	• 용도 : 주택임차신청 위임용 ※ 본인 발급용 (청약신청자) 1부
	위임장	-	• 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1부, 인장(도장) ※서명가능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특별공급(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소득 입증제출 서류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①해당직장/세무서 ②해당직장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임차인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해당직장/세무서 ②,③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건본주택 비치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지자체(읍면동)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임차인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6)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 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임차인모집공고[2026. 03. 25.(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소득증빙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사진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배정세대수 : 261세대 (84A : 90세대, 84B : 33세대, 104A : 138세대)

모집유형	자격요건	선정방법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6. 03. 25.(수)]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 900%)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차인 선정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입차인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입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입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차인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입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차인 명단은 당첨자발표 후 홈페이지 (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입차인 미계약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입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대상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의무준수 약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신분증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전체발급"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 로 발급
	기타서류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체발급" 선택하여 발급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본인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 (※ 청약신청자 본인 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차인모집공고[2026. 03. 25.(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을 모두 표시 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신청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타입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 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주택청약 참가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기업, KB국민, SH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iM뱅크(구. 대구), BNK부산, 광주, 제주, 전북, BNK경남, KEB하나, 신한

■ 청약 신청금 환불안내

구분	내용
환불대상	• 인터넷청약자 전원 (※당첨자(예비임차인 포함) 및 낙첨자 전원)
환불시기	• 당첨자발표일 익영업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발표일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가 청약자 명의로 동일해야 환불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안내	• 주택청약 참가은행 (IBK기업, KB국민, SH수협, NH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iM뱅크(구. 대구), BNK부산, 광주, 제주, 전북, BNK경남, KEB하나, 신한)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 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 및 출금이체 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거래은행 출금계좌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청약 신청금(10만원) 이상 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청약 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로그인 ⇒ 주택선택 ⇒유의사항확인 ⇒ 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확인 및

	청약 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스마트폰 청약 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 스마트폰앱 : “청약Home” 검색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또는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씩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2명 모두 신청 시 무효)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접수 시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완료 하지 않고 기준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30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검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 다목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p>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p>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7.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p> <p>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이하 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4 공급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발표

■ 청약접수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약신청금	당첨자발표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2026. 03. 31.(화)	인터넷 청약접수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www.applyh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6. 04. 03.(금) 16:00이후 -개별조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조회는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 (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계약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정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 04. 04.(토) ~ 2026. 04. 05.(일) (2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

※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제출은 본 입차인모집공고 공급유형별 자격확인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차인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기간 내 부적격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구비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구비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제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계약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서류	• 사업주체에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 [2026. 03. 25.(수)]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예 :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 계약금	84A, 84B, 84A-1, 84B-1	하나은행 231-910054-02204	우리자산신탁(주)
	104A	하나은행 231-910054-03904	우리자산신탁(주)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 [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은 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상기 모계좌 [84Am², 84Bm² 타입, 하나은행 231-910054-02204, 104Am² 타입, 하나은행 231-910054-03904,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타입별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타입별 납부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에 따라 계약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 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임차인 에게 공급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임차인에게 공급됩니다.
 - ※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임차인에게 공급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기본 시공되고 미확장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샤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는 계약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 전출 시 임차기간동안 사용상 발생한 발코니확장 부분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원상복구 의무책임이 따름으로 원상복구를 다하지 않고 전출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대리인과 임차인이 함께 입회하여 전출세대의 상태를 점검 후 예측 가능한 수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하고 전출이 가능합니다. 이후, 하자수리비용의 사용에 대한 증빙은 전출한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는 문서 또는 사진으로 증빙할 예정입니다.(조치한 부분과 비용처리 영수증 전송 등)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계약 시	1회 (10%) 2027.06.20.	2회 (10%) 2028.04.20	3회 (10%) 2028.08.20.	입주지정일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삼성)	84A, 84A-1	5개소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8,5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5,100,000
	84B, 84B-1		8,5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5,100,000
	104A		9,0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5,4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공 및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계약 후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 및 실외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선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임대보증금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 선정 시 각 실별로 적절한 단위부하에 따라 에어컨 장비가 선정되며 부득이할 경우 장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실내기 사이즈는 장비사양, 제조사에 따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등 사양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세대 내부 구조가 변경될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입주 후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계약자가 개별 시공이 불가함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실 옵션을 선택하여도 알파룸에는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퇴거 시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감가상각비(판매금액의 5%/년)를 적용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후시공이 불가 할 수 도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공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가 진행하며, 입주 후 천장형시스템 관련 하자보수 및 AS관련 문의는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에게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계약 시	1회 (10%)	2회 (10%)	3회 (10%)	입주지정일	
					2027.06.20.	2028.04.20	2028.08.20.		
현관중문	전타입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1FIX+2연동)	1,60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960,000	
프리미엄키친	84A, 84A-1	대면형주방 + 디자인판넬(알파룸확장벽) + 우물천정/포인트천정/간접조명+독립형후드+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USB)+ 고급주방가구(플랩상부장)+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고급형) + 3구인덕션(삼성, LG)	삼성	14,200,000	1,420,000	1,420,000	1,420,000	1,420,000	8,520,000
			LG	14,500,000	1,450,000	1,450,000	1,450,000	1,450,000	8,700,000
	84B, 84B-1	대면형주방 + 일체형식탁 + 포인트천정 + 독립형후드 +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 고급주방가구(플랩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고급형) + 3구인덕션(삼성, LG)	삼성	16,700,000	1,670,000	1,670,000	1,670,000	1,670,000	10,020,000
			LG	17,0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0,200,000
	104A	대면형주방 + 일체형식탁 + 포인트천정 + 독립형후드 +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 고급주방가구(플랩상부장)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벽체(고급형) + 3구인덕션(삼성, LG)	삼성	15,500,000	1,550,000	1,550,000	1,550,000	1,550,000	9,300,000
			LG	15,800,000	1,580,000	1,580,000	1,580,000	1,580,000	9,480,000
주방장식장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84A, 84A-1	유리 장식장 + 톨 수납장		5,30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3,180,000
	104A			5,600,00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3,360,000
키친핏 가구	전타입	빌트인 냉장고장 + 톨수납장 (냉장/냉동/김치or변온 1도어 3세트 구성의 빌트인냉장고 설치가능)	1,10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660,000	
디자인월	84A, 84A-1	기본형 주방	거실 대형아트월(600*1200)+아트월 상부	4,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품목	타입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계약 시	1회 (10%)	2회 (10%)	3회 (10%)	입주지정일	
					2027.06.20.	2028.04.20	2028.08.2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간접조명+거실후면/복도벽 디자인판넬	3,80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2,280,000	
	84B, 84B-1	거실 대형아트월(600*1,200)+아트월 상부 간접조명+거실후면/복도벽 디자인판넬	4,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400,000	
	104A	기본형 주방	4,90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2,940,000	
		프리미엄키친 선택 시	거실 대형아트월(600*1200)+아트월 상부 간접조명+거실후면/복도벽 디자인판넬	4,700,000	470,000	470,000	470,000	470,000	2,820,000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84A, 84A-1, 84B, 84B-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700,000	70,000	70,000	70,000	70,000	420,000	
	104A		1,70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020,000	
공용욕실 파우더장	84B, 84B-1, 104A	파우더장 + 은경	1,150,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690,000	
수납강화형 알파룸	팬트리형, 드레스룸형	84B, 84B-1	팬트리 시스템 선반 + 팬트리 도어	1,0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84B, 84B-1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 드레스룸 도어	1,000,000	100,000	100,000	130,000	130,000	780,000
자녀방 불박이장	전타입	침실3 불박이장 (여닫이형)	1,350,0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810,00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입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A, 84A-1, 104A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알파룸 공간까지 주방/다이닝 공간이 확장되며, 수동형 상부 플랩장, 기본형 여닫이 하부장,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아일랜드 하부장, 독립형 후드, 더샵 빌트인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인덕션, 우물천정/포인트천장/간접조명, 벽부형 주방 악세사리바, 다이닝 벽(알파룸 확장벽) 디자인판넬이 적용된 대면형 주방으로 설치됩니다.
- 84B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수동형 상부 플랩장, 기본형 여닫이 하부장,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아일랜드 하부장/일체형식탁, 독립형 후드, 더샵 멀티콘센트(전열1구, 무선충전, USB), 인덕션, 포인트천정, 벽부형 주방 악세사리바, 툴 수납장이 적용된 주방으로 설치됩니다.
- 84A, 84A-1, 104A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 시 'c'자 주방(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과 3구 가스쿡탑,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2구), 알파룸이 시공되며,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우물천정/포인트천장/간접조명, 다이닝 벽 디자인판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4B타입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여닫이 상/하부장 3구 가스쿡탑, 침니형 후드, 더샵 빌트인 콘센트(전열 2구)가 시공되며, 아일랜드 일체형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포인트천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4A, 84A-1, 104A타입 다이닝 장식장 옵션은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시 장식장 측면 복도측 날개벽이 설치됩니다. 미선택시에는 디자인판넬로 마감되니, 추가선택품목 카탈

로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이닝장식장(주방 장식장)의 가구 내부 및 전열기기 설치 및 사용 시 가구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MMA)주방 상판과 주방벽체 타일마감이 적용되며 상판과 타일이 접하는 부분에는 뒷턱이 설치됩니다. 기본형/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옵션 선택 시 인덕션이 설치되며 기본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키친핏가구 옵션 선택 시 빌트인냉장고(빌트인 1도어 3세트 냉장/냉동/김치or변온 구성의 삼성 비스포크 또는 LG FIT&MAX 설치 가능)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와 물수납장이 설치되며 냉장고장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가구 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의 형태 및 크기, 수납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키친핏가구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설치되며 도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거실 전면은 대형 포슬린타일(600*1,200) 및 상부 간접조명(픽처레일 일체형)이 설치되며, 거실 후면/복도 일부 구간에 디자인 월판넬 및 픽처레일이 시공됩니다. 포슬린타일은 자재 특성상 밴딩(표면 휘어짐)이 있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재 이음매 간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월판넬은 본공사 시 판넬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디자인월 옵션 선택 시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 디자인판넬의 적용 범위는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옵션 미선택 시 아트월은 거실 전면부위에만 400X800 포슬린타일로 설치되며, 타일 장방향이 가로로 설치됩니다. 또한 거실 후면 및 복도는 지정된 거실 벽지로 마감되며, 아트월 상부 간접조명(등박스 포함)은 시공되지 않으니 견본주택, 홈페이지, 추가선택품목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월 선택 시 마감재 및 시공두께로 인하여 거실 및 복도 공간의 치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외부창호 프레임과 마감재 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픽처레일(조명일체형 픽처레일 포함)은 소형액자 및 전시품을 위한 제품이므로 대형제품(벽걸이 TV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액자걸이 와이어(별도 구매 필요)의 허용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픽처레일 일체형 간접조명 몸체 1개소[길이 0.75~1.25cm] 기준으로, 와이어 2개 이하(와이어 당 허용하중 3kg 이내)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형/추가선택품목옵션 간 주방가구 마감재, 상부장 구동방식 및 수납길이, 하부장 열림방식(서랍 유/무), 수납장 내부에 설치된 하드웨어(힌지/서랍재 등 부자재), 수납장 구성이 변경되니, 상담을 통해 기본형/유상옵션형 주방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 시 침실1(안방)드레스룸에 시스템가구가 설치되며, 미선택 시 공간과 가구도어만 설치됩니다.
- 84B, 84B-1, 104A타입 공용욕실 파우더장 옵션 선택 시 공용욕실 전실에 파우더장과 거울이 설치되며, 미선택 시 공간과 여닫이 목도어만 설치됩니다.
- 84B, 84B-1타입 알파룸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 시 시스템선반과 가구도어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팬트리형 또는 드레스룸형)에 따라 시스템선반 구성은 달라집니다. 미선택 시 공간과 여닫이 목도어가 설치됩니다.
- 자녀방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침실3에 여닫이형 불박이장이 설치되며, 타입에 따라 도어 개폐 방향과 가구 규격/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스쿡탑 대신 인덕션이 설치될 경우 주방의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는 전기차단 전용 제품으로 설치되며 주방 내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옵션 추가금액에는 가스배관 및 차단기 설치비용이 정산된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추후 가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입주 이후 개별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현관중문, 다이닝장식장, 키친핏 가구, 자녀방 불박이장, 공용욕실 파우더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는 퇴거 시 임차인이 탈거를 원할 경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기준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프리미엄키친 퇴거 시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감가상각비(판매금액의 5%/년)를 적용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 디자인월 퇴거 시 임차인이 탈거를 원할 경우 유상옵션 미선택 기준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스마트감성조명 더샵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계약 시	1회 (10%)	2회 (10%)	3회 (10%)	입주지정일
조명특화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84A, 84A-1,	거실 우물천정 내 간접조명(점소등제어)+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감성조명(색온도, 밝기제어)	2,60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1,560,000
	84B, 84B-1		2,70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620,000
	104A		2,80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680,000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간접 LED조명(점소등 제어)이 설치됩니다. (알파룸 및 일부침실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 옵션계약안내문 참조)
- 거실 감성조명은 월패드 및 거실스위치, 침실 감성조명은 침실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 거실, 주방 아트월면 상부 LED 간접조명 및 주방 우물천정 간접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스마트감성조명 더샵 루미나는 퇴거 시 임차인이 탈거를 원할 경우 유상옵션 미선택 기준으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타입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십시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 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마감재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모형, 카탈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선택에 따라 퇴거 시 탈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일부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이 설치되지 않는 불박이장류(불박이장, 주방가구 등)옵션은 탈거 후 벽, 바닥, 천장면 마감을 개별 임차인이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우리은행	1005 - 404 - 822439	우리자산신탁(주)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십시오.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지정계좌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잔금은 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잔금은 상기 모

계좌 [우리은행 1005- 404 - 822439, 예금주 : 우리자산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계약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7 유의사항

■ 입주관련 안내

- 임차인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임차인 사전점검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 일자를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임차인현장도착 ⇒ ③접수·교육 안내 ⇒ ④임차인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점검표 제출 ⇒ ⑥입주 전 보수완료 ⇒ ⑦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본 주택의 준공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부 대출 또는 일반 담보대출을 통해 PF대출을 상환할 예정이며, 준공 후 본 주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예정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도금대출 시 사업주체는 중도금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임대보증금의 54%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타입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임차금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 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임대보증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적격대출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 및 조건에 따라 대출알선 조건의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금(5%)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분양권 포함)는 중도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금을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관련 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가진 모든 권리는 양도받는 자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 임차권 양도안내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 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징구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임.(계약금, 중도금에 한함)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5-704-0020000호	205,052,140,000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약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사업 양수권자에게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임대사업 양수권자】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금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임대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약관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지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8.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약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8 유의사항 및 단지어건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따름.

구분	내용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주)와 체결하며, 시공회사는 (주)포스코이앤씨입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납부, 이사짐의 도착, 임차인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임대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 됩니다. • 기타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모집공고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옥상장식물, 최상층 인명구조공간(헬리포트 포함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주택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눈부심·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점 명확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본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본 건물의 세대당 공급면적 및 계약(임대)면적은 본 건물 내 설계변경, 공부정리 절차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상호조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증감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통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문의 타입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시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기준 (일반공급 :84A, 84B, 104타입, 특별공급 : 84A-1, 84B-1 타입)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타입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 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이며, 최상층은 계단 및 옥상저수시설이 설치된 층으로 주택이 설치된 층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오피션, 시스템어컨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오피션)계약은 임차인이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사업주체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구분	내용
	<p>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의 5% 완납 시 중도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임대료(미납대금, 연체료 포함)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료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임대차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은 계약금(5%), 중도금(1~6회차 54%), 잔금(41%)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 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에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교육청, 인·허가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요청 시 임대차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십시오. • 본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 및 임대보증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각 타입별, 층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임대보증금이 상이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 시 임차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임대보증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안내 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임차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을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 주거공용부분인 전실 및 홀 등은 임차인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대(특히, 최상층 세대)에서 옥상을 전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 외벽 마감은 탄산화 저항성 도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향후 외벽 재도장 시에도 구조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산화 저항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수성페인트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추가 입주서비스는 입주 후 변경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보증금 감액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서비스는 입주 후 서비스의 종류 및 유·무료 여부, 무료서비스 제공 금액 및 기간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각 세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시공 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개소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옥외광고물 심의 포함),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1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7.12.28.]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임차인과는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 및 공법은 굴토 후 지반층 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측 도로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설치된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는 영구적인 공공의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유지 관리 책임은 준공 후 입주민(임차인 포함) 및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서측 근린공원 변 단지 내측으로 공공조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계획 구역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입주 지연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홍보자료 등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변경 인·허가 포함)내용대로 시공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사인물, 조경계획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건축면적, 건폐율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 및 CG,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공사 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 의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에 따라 각 시설 및 각 호실의 내·외부에는 공공의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을 포함한 사업지 내·외부에 소방차 정차공간이 바닥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내·외부에 적용되는 마감재(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타입별 및 구조의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사의 도산 시공성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에 포함된 설계도서 내용은 사업주체가 구조성능, 품질개선, 시공성 향상 등을 반영한 실시 설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 및 각 호실에 설치되는 실·내외 마감 재료는 사업주체가 구조성능, 품질개선, 시공성 향상 등을 반영한 실시 설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자전거도로, 녹지, 통로 동선 등은 설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모집광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십시오. • 임대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각종 홍보물(팸플렛,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임차인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등),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타입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하시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홍보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시공 됩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CG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모델하우스 내 전시모형 (건축물, 조경, 시설물, 각 호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의 국가시책에 따라 크기, 형태, 색상 재질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 계획 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및 농작물경작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계획 구역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계획 구역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입주 지연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 부과 원칙은 구분소유자의 지분율에 있으나, 통상 구분 호실별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자료 등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변경 인·허가 포함)내용대로 시공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등에 표현된 모형, CG, 카탈로그, 안내지 등의 이미지 등에 표현된 각 호실별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지장물, 기둥, 조경, 미술장식품, 소화전, 우·오수배관, 한전인입박스 등)의 표현은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는 개략적 이미지 및 모형제작물이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도서를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향후 변경, 추가, 설치 등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CG 및 이미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주체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계획 구역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각 시설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 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합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및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출입문 등의 상세사항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도서에 준하며, 향후 실시 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영업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본 건물 중 일부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미설)의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지분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임차인 또는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 계약 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임대보증금은 각 실의 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호실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차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타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포함)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지급 또는 임대보증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및 개발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해당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p>건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는 84B, 84B-1, 104A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84A, 84A-1 타입의 모형 및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치수 및 마감재색상, 설치 제품의 크기,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타입 84B, 84B-1, 104A 타입 외 건본주택 미건립 84A, 84A-1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건본주택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인·허가관청에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임대보증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건본주택 내 안방 비화장 발코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으며 안방발코니는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바닥 배수구 및 타일마감이 기본 설치됩니다. 또한 발코니는 단열 및 바닥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안방과 발코니 사이에는 본 공사 시 분합문이 설치되고, 실외기실은 안방발코니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바닥타일이 시공되며, 바닥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모형에 표현된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소방 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포장(자재 및 문양), 환기구(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공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가 진행하며, 입주 후 천장형시스템 관련 하자보수 및 AS관련 문의는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등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의 경관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형 외 견본주택 미건립 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아트웍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택지여건</p> <p>입지환경 (학교, 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p> <p>단지 주변도로</p> <p>교육 시설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설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며, 입주 후 시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산세교2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서 측에는 약 28M 도로가, 단지 남서 측에는 약 26M 도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오산역 환승센터 연결도로, 경부선 횡단도로 등)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설치된 가감속차로 부분 인도(보도연접형 전면공지)는 영구적인 공공의 통행권 및 오산시의 항구적사용(행정청이 필요로 하는 점용, 굴착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책임은 준공 후 입주민(임차인 포함) 및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본 사업 계획 구역의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임차인 의견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오산시가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에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오산시와 체결 예정이며, 다만 입주예정일 6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신설예정인 (가칭)세교2-4초(오산초 신설대체 이전)에 중학생은 (대호중, 오산중, 세교2-2중(가수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오산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군은 향후 배치계획에 따라 오산중학군(오산중, 대호중, 가수중(세교2-2중))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세교2-4초 부지 내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학교설립은 최종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승인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설학교 설립지연 시 입주 시기 조정 등이 요구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 동측에는 오산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산천 산책로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동측에 파크골프장이 인접하여 소음, 야간 빛 공해, 날아오는 공 피해 등 골프장 운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전 현장 주변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와 인접한 파크골프장과 본 단지 경계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파크골프장 설치) 본 단지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직접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 단지 외곽부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 주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남측 약 1km 반경에 사회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일반공업지역, 오산시환경사업소 등) 등이, 남서 측 약 1.5km, 북서 측 약 2.5km 반경에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이 위치해 있으며,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연무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 운영에 따른 조명 눈부심 등에 의한 피해 등 기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북서 측에 상업용지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남측 약 1km 반경에 열병합발전소(DS파워) 가 존치하며, 운영 시 연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무 및 소음 등에 따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인근으로 통신, 전기선로, 전봇대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조망권이 저하 및 불편함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서측으로 오산세교LH12단지(행복주택)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 약 1.5km 반경(누읍동 22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인증기술에 의해 검증된 MBR+LENA공법의 완전지하화 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오산시 공고 제2025-536호)가 공고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제3차 제안공고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운동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

구분	내용
단지 및 주동계획	<p>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위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계법령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및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환기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부 문주 계획으로 인접동의 저층세대에 조망, 조명 눈부심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야간 경관조명(일부 동 측벽 및 일부동 옥탑, 옥상장식물 등)계획으로 인접동에 조명 눈부심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하부에 DA, 제연휨룸, 전기, 설비기계실, 등이 위치하여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DA와 인접한 동(1306동 후면 등)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DA 작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301동 및 1302동 지상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DA는 주동 후면 방향으로 배기되도록 변경될 예정이며, 이는 입주인 출입 동선과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문주의 디자인 및 위치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소방차 부서공간 또한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실외기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상기(판매 및 근생시설) 옥상은 오피스텔 주동 하부에 위치하므로, 오피스텔 저층에서는 오피스텔 및 판매/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작동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조망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사용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타라이트,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소는 동 당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동은 [2]개소가 병렬 배치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은 입체적 단지 조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는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조경석, 석축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임차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해 변경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조경 공간에 D/A (설비 환기구) 의 노출이 있어 보행 공간에 인접한 경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 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공간 및 조경 시설물 내 취사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옥외공간 (수경시설 등)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 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조경공간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사하셔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담장)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 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시 및 소방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 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외부에 계획된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 공간 및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Ⅵ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0.182g]입니다. • 본 주택을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축벽, 발코니얹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오차범위 내에 각 주동 높이, 옥탑의 높이, 옥상장식물 높이와 형태 등은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축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 크기, 디자인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접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및 외부 시설의 외관/색채 등의 공용부 설계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 개인 취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동 표기는 설계 도서를 준용하여 아파트는 1301동, 1302동, 1303동, 1304동, 1305동, 1306동, 오피스텔은 1307동으로 표기됩니다. • 본 건축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출입은 평상시에는 제한되며, 다만 비상 시에는 피난용 출입이 가능합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작은도서관(에듀라인지) 등)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임차인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중간층 벽체, 지붕 및 옥탑층 또는 옥상 등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이동통신용 무선중계기,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피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는 지하매설물 토질 및 지하수위 등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흠막이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굴착 후에 따른 지반의 지내력 확인 후 공법, 범위 등 기초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흠막이 설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건축물의 외부입면 계획의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검토결과 및 소방관 진입창 등의 법적요구조건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연돌현상 소방 및 사용성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로비층 및 지하층의 출입문,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구조 및 출입문 형태(방화문을 방화셔터로 변경), 위치 등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관련 편의시설의 요구조건에 따라 관련사항의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 • 건물 내 설치된 감충방화문의 형태(개폐방법 등) 및 재질은 사용성의 편의 및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갑종방화문의 시험은 세대 현관문, 계단실문으로 진행되며, 그 외는 시험실 여건에 따라 성적서로 대체 됩니다.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엘리베이터의 전실 등은 관련 법적으로요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계단, 위치 등 축소,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상 층에 일부구간에 옥상조경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인원이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의 조명, 개별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제연휀룸, 소방펌프 등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른 일부 주동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는 실시설계 시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으로 주동입면, 높이, 디자인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조건, 사업계획승인(변경)조건, 각종 심의조건, 각종 인증조건 등에 따라 본 사업 계획 구역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공공보행통로 등) 본 사업 계획 구역 내·외 시설물, 조경 계획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하며, 추후 입주민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서 향후 관리 또는 비용정산은 관리주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주는 소방차 진입을 고려한 높이(약 5M 이내)로 조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문주조명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단지명 및 브랜드명 등 외부 사인물(문주, 주동 측벽, 주동 옥상장식물 등)은 사용승인 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따라 홍보용CG 및 견본주택 내 모형과 형태, 색채, 크기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감재의 품질, 품귀 시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과 상품성개선, 품질향상, 시공성 개선 등으로 마감 변경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공용부 및 부대시설의 천장과 벽이 접하는 부분은 코킹으로 마감 됩니다. • 1301동 43층, 1302동, 1303동, 1306동 42층, 1304동 41층, 1305동 37층까지 공동주택 세대층이고, 1307동 33층까지 오피스텔 세대층이며, 각 주동 최상층에는 저수조 및 부속시설을 위한 층입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함께 계획된 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 2~4층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 2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별도 계획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일부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 임차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남서측 도로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북서측 도로에 위치하여,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일부 2.7M로 택배차량이 각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3~4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치 여건에 따라 일부 경우 주차 후 해당 동의 승강기 홀 접근의 이동거리가 멀거나 증가, 해당 동의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 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지하출입구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준공 후 입주초기에 차량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을 경우 지하의 경우 내외기 온도차, 우기 등 기상요건과 토양과 접한 지하외벽에 온도차 등의 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는 공사하자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바닥준높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 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바닥마감은 설계에 배수 구배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두께 0.12mm 에폭시코팅, 천정에는 두께 약3mm 흡음 무기질계 뽕칠로 시공됩니다. 단, 데크 하부의 고른 면에는 천정뽕칠을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층고, 천장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장경사로)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선,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은 기능 및 사용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인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량주차 방법(전면 또는 후면주차)에 따라 인접 구조물(기둥 등)의 간섭으로 인하여 일부 주차구획에서는 차량문의 개폐가 어려워 이용 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임차인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경사로) 천장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의 주차장은 시설별로 주차장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의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건축물은 복합시설로서 각 용도의 이용자가 동선 계획 상 해당 층 주차장의 면적을 시설별로 배분된 일부분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각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복합건물로 주차장은 용도별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계획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영역으로 구분되어 산정되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통합관리가 원칙이며 향후 관리주체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부대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과 진입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에듀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오피스텔 임차인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 및 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주체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며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임차인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시설의 아파트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임차인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실, 작은도서관(에듀라운지) 등 일부시설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 어린이집 옥상 일부구간에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마감(바탕몰탈 포함)은 향후 임차인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벽체와 천장마감은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84A(84A-1)타입은 건립세대인 84B(84B-1)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안내문 및 자료(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세대 내 평면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층고, 벽체두께, 바닥판두께 등의 치수는 시공여건에 따라 설계도면상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하향식피난구, 현관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 /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임차인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 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고 가구 문 개폐 방향 등이 좌우 변경 될 수 있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십시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 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경량 2등급/중량4등급 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은 표준 실험동 등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사전인정제도)에 따른 등급으로 실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한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타입이 기본으로 적용되나, 개정된 관련법 적용 시 세대 층고에 따라 하향식 승강기 타입이 일부 세대에 적용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 시 세탁기 용량에 따라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내의 오차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 발코니#2(다용도실)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 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비내력벽 구조관련 세대 내는 ALC블럭 또는 경량벽체, 세대 외 공용부의 지상층 및 지하층 코어내부는 ALC블럭 또는 경량벽체 또는 시멘트블록, 외기와 면한 지상층, 지하주 차장은 시멘트블록으로 시공되며, 설계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성, 상품개선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도 또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 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자재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관 디딤판/결레받이, 욕실 뒷 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 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특성상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 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과 무관합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코어)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고,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 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거실 아트월 타일(옵션 선택 시 디자인월 포함) 마감면은 벽체부위에 따라 약간 돌출 등 차이 가 있을 수 있어서 이는 하자가 아니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옵션을 선택할 경우 마감으로 인하여 거실 및 복도 폭 등이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월 옵션선택시 복도폭 1.15m~1.2m)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실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 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내부에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 욕실문에는 손끼임 방지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안방과 발코니 사이 분합문에 면한 벽은 조적벽에서 골조벽으로 구조성능 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문 벽체두께 100mm는 하자방지와 구조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배관과 출입문 간섭으로 인하여 출입문의 위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하향시피난구(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공용부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기본 제공 품목의 가전, 마감자재 등은 제품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별도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벽돌, 콘크리트, 단열재 마감) • 거실 우물천정은 기본시공으로 제공되며, 옵션선택에 따라 세대 타입별로 천정 디자인이 상이합니다. • 세대 전면발코니 난간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동별,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볼 하부장은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실 사용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 및 약세서리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옥상조경 및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조경, 세부 식재계획, 지장물, 외부 특정 시설물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가시성 및 접근성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은 거주환경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입주지정 기간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입주지정기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상의 제반조건 및 법규 기준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는 입주주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1~2층, 지상1~2층에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빛 공해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별도 분양시설이므로 임차인은 이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창호의 프레임, 색상, 형태, 개구부의 크기, 하드웨어, 유리 사양 등은 성능개선, 안정성 검토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 방향, 색상,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 접합 등에 따라 실내에서 프레임 사이에 줄눈이 보일 수 있으며, 내부 벽체 마감재 사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외측 창호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내측(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창호는 철제난간이 설치되며, 형태, 색상, 높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분의 외부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창호의 유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풍동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유리두께가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공용 기계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부지 내·외부 유출입구 등)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우수처리시설, 제습장치, 냉난방기,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지상 구조물(환기/제연용 DA, 탐라이트, 발전기 연도, 천창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인근 호실에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릅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일정 기간 동안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인수·인계 후 운행으로 인한 인테리어 파손은 임차인 책임 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병법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리,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1305, 1306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는 이동통신 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303동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난방은 지역 열원을 이용한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소화용 저수조 및 소화 펌프실이 설치되어 인접 호실은 소음, 진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 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포함)공용부의 일부 기능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공동주택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기계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장치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환기장치에는 미디움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필터교체주기(연2회 교체 권장)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ϕ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제품 선정전에 확인하여 주십시오.(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 시공(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의 손잡이의 방향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외기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기적인 관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내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도 없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 스위치 상부에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천장 높이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길이 및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 온도조절기가 삭제될 수 있으며, 거실 또는 인근 침실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음식 탈수기, 옵션에 따른 추가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으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에 한하여,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 포함)가 기본 제공됩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며,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내부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자동식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홍통, 각종 배관 등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구 수량이 추가되거나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환기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여 침실 내부(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체 감지기는 1, 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 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해 급수급탕분배기는 당해 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세대에 2개의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지역난방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임차인이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별도의 조명 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팬트리에는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침실 혹은 거실과 연동되어 난방이 공급됩니다. • 세대 방화문에 설치되는 스마트 도어락은 디자인 및 개발단계로 일부 디자인 및 사양(라이팅 색상, 밝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옵션에 따라, 세대에 적용 되는 전원 구성이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속 기계, 전기, 소방 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법의 기준 내에서 위치, 관경, 재질 등)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의 세대 내 원격제어는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합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 열림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동현관 자동 문 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시스템에서 백그라운드 동작중인 앱을 임의로 중지 시킬 경우 사용자가 앱을 다시 시작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차위치 안내서비스는 제공되는 시스템 방식에 따라 구성 및 방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여부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미제공 되며, 외부플랫폼의 음성인식기기와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 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외부 플랫폼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삼성전자, LG전자, KT, 구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연동 시 제공되는 기능은 각 플랫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연동을 위한 환경 및 기능의 종류는 각 플랫폼 운영업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플랫폼과의 연동은 입주일로부터 3년(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경우 1년)간 무상이나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금 주체는 각 플랫폼 운영사임) - 각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각 플랫폼 연동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제공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이앤씨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단지 홈페이지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무상기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또한 운영업체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월패드 점자 커버 및 점자 스마트스위치는 입주 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지참 필요) - 장애인용 스마트홈 상품의 디자인, GUI 등은 개발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심표(국민DR)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입주인이 참여 가능한 에너지심표(국민DR) 서비스는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제도로, 전력거래소/수요관리사업자/정보제공사업자의 시스템 연계로 제공 및 운영되며, 각 운영사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 또는 설치된 입주인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업체(브랜드)는 입주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구현된 자녀방 구독가구 테마존에 설치된 가구, 바닥마감재, 벽지, 소품 등은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으며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시연되는 스마트홈 플랫폼 내의 컨시어지 서비스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기능, 서비스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상영되는 입주인 서비스 홍보 영상은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유)대화	(주)삼진탐엔지니어링	(주)삼진탐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540,810,000원	842,230,000원	1,195,949,000원	155,000,000원
사업자등록번호	208-81-18350	402-81-51776	883-81-01475	883-81-01475

■ 사업주체 /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자금관리업무수탁사	시공사
상호	오산세교아트피에프비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포스코이앤씨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여의도동, 세우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법인 등록번호	110111 - 7728029	110111 - 2003236	174611-0002979

■ 홈페이지 : <https://www.더샵오산역아크시티.kr>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원동 182, 183

■ 문의 : ☎ 1866-0533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 안내

※ 본 임차인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